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사업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사전영향협의 대상을 준용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을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등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 등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방식 및 절차를 정하고, 전문인력·전담조직·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안 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산업 및 항만 재정비,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사업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1]의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정함.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안 제3조의3 신설)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경관·환경·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및 일시·누적적인 영향의 규모와 범위,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적정성 등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정함.

다. 대상사업의 사전검토(안 제3조의4 신설)

- 1)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상사업의 위치, 면적·총사업비 등 규모,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등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는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비대상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안 제3조의5 신설)

- 1)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는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해당 방안을 적용한 후 남은 부정적 영향의 규모 및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3조의6 신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을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등 기관 또는 법인,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

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3명 이상의 전문인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정함.

바.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보완·조정 등(안 제3조의7, 제3조의8, 제3조의9 신설)

- 1)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해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정한지 및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해당 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3)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거·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잔존영향의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상사업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정함.

사.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3조의10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에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의 개발사업으로서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경관·환경·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및 일시·누적적인 영향의 규모와 범위
3.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사업 인·허가기관의 장 및 해당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위치
2. 대상사업의 면적, 총사업비 등 규모
3.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4.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과의 이격거리
5.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대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작성 대상

2.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비대상. 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
라 처리한다.

④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검토 결과
를 통보받은 후 대상사업의 계획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
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련 자료 분석
3.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4.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제거·저감방안
(이하 “제거·저감방안”이라 한다)
5. 제거·저감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의 규모 및 범위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 가. 국·공립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

연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추는 것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

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절한지 및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제거·저감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3. 잔존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한지 여부
4. 대상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공익·사익과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나목에 따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7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후 제3조의4에 따른 검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제3조의4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작성 대상으로 통보될 경우 제3조의5, 제3조의7 및 이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조의9(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3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분석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제거·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상사업 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사업계획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2.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조정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

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10(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계유산법 시행령 [별표 1]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제3조의2 관련)

구분	대상 개발계획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대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의 장이 결정·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2.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정한다)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3. 교통시설 의 건설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4. 하천이용 및 개발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정한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5. 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비고

1. 해당 사업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의10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 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8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1조의8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의8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1]의 개발사업으로서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u>
<u><신 설></u>	<u>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u> <u>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경관·환경·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및 일시·누적적인 영향의 규모와 범위</u> <u>3.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u>

<신 설>

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사업 인·허가기관의 장 및 해당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위치
2. 대상사업의 면적, 총사업비 등 규모
3.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4.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과의 이격거리
5.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

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대
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
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 시·도
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사전검
토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국
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
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
원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
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
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세계
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작

성 대상

2.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비대상. 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대상사업의 계획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신 설>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련 자료 분석
3.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4.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제거·저

<신 설>

감방안(이하 “제거·저감방안”이라 한다)

5. 제거·저감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 영향”이라 한다)의 규모 및 범위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
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
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
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
립된 비영리법인

바.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
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
상 갖출 것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
시계획·도시공학, 조경·
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
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
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
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
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 설>

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절한지 및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제거·저감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3. 잔존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한지 여부

4. 대상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공익·사익과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

<신 설>

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나목에 따르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의 통보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7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

<신 설>

실을 통보받은 후 제3조의4에 따른 검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제3조의4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작성 대상으로 통보될 경우 제3조의5, 제3조의7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한다.

제3조의9(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3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분석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제거·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
서,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상사업
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
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
사업계획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2.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
· 조정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
자는 보완·조정된 세계유산영
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
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신 설>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④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10(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
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
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
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

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
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
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신청
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
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서를 해
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
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846